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95
----------	------

2021년 2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년 12월 23일, 김용연 의원

나. 회부일자: 2021년 1월 21일

다. 상정일자: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2월 25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를 주도하도록 하고, 공공선별장을 각 구청 또는 권역별로 1개씩 두어 친환경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선별장 확보 등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과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 7. (생략)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9. 4. 8.)에서 정의하고 있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등 적절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해당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없거나 공공선별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각 기초자치단체 간 사전협의 및 통합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외에도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 및 해지요건과 공공선별장 운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 훈령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2019. 1. 16.)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분리·선별할 수 있는 집하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을 선별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¹⁾.

1) 조례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 환경부 통계²⁾에 따르면 2018년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34,841톤/일이고, 이 중 대부분인 95.5%(33,286톤/일)가 재활용되고, 매립되는 비율은 4.3%(1,499톤/일), 소각되는 비율은 0.2%(56톤/일)에 불과함.

이 수치들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합한 수치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에 속해 있으나, 이의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관계로 통계적으로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는 건설폐기물과 분리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추정치³⁾로만 관리하고 있음. 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에만 급급할 뿐 배출량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함.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량		25,524	30,035	33,464	34,846	34,841
처리 방법	재활용	24,303	28,194	31,967	33,473	33,286
		95.2%	93.9%	95.5%	96.1%	95.5%
	매립	1,149	1,772	1,422	1,304	1,499
		4.5%	5.9%	4.2%	3.7%	4.3%
	소각	72	69	76	69	56
		0.3%	0.2%	0.2%	0.2%	0.2%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로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구분 없이 집계되며, 이를 합한 수치임.

2) 2018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년, 환경부)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매립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의 60~80%로 추정됨.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시 또한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선별장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안 제5조의2제1항과 제2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할 수 없다는 조례 입안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자치구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 또는 지정·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의 제·개정 없이도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능한 사안임.

안 제5조의2제3항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것으로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안 제5조의2제4항은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한편, 서울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발생 규모나 관리 실태를 미루어 볼 때 세밀한 통계 관리와 공공선별장 설치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통합 관리,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 입안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5조의2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제3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95
----------	------------

제안년월일: 2021년 2월 25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 입안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5조의2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제3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삭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공공장 생활폐기물 공공 선별장 확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시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고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의 육내화 또는 지하화 등 적절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u></p> <p><u>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시장 생활폐기물을 자치구에서 설치한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지부족 등으로 관할구역내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의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각 자치구간 사전협의 및 통합조정을 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와 공시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한다.</u></p>	<p><u>제5조의2(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 선별장 확보 등 지원) 시장은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자치구의 공시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 시장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 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